



대구대학교와 한국의학연구소의 산학협력 협약서



대구대학교와 한국의학연구소(이하 ‘양 기관’이라 함)는 지역사회 의료기술 및 학문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 기관의 교류 증진과 협력 체제 강화를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양 기관의 교류증진과 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상호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내용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.

1. 공동연구 및 학술정보교류
2. 학생(대학원생 포함)들의 임상실습에 관한 사항
3. 대구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
4. 학술세미나 및 교육과정 공동개발
5. 보유기자재의 공동 활용
6. 기타 상호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

제3조(진료비 감면)

한국의학연구소는 대구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시행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협의한다.

제4조(효력)

본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며 유효기

간은 1년으로 하고, 일방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매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.

제5조(협약의 이행)

양 기관은 신의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, 날인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4. 10. 13.



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총장 홍덕률

홍덕률

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

이사장 이규장

Lee. K.J

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3길 54